# 서울석촌도시형생활주택(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공급위치: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11길 8-19(석촌동)

▮공급대상 : 17A, 24A

#### ▮모집개요

금회 모집하는 주택은 「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계법령 등에 의거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으로서 당첨자 선정,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필히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며 본 모집공고는 선착순 모집이 아니므로 모집 기간 내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서울석촌도시형생활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개요

- •당 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으로서, 이 주택의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2012.12.)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되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년 03월 03일(수)이며,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나이, 지역 등)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시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기 입주단지(입주개시일: 2012.11.26)로서 금번 예비입주자는 대기 중인 예비자의 후 순번이 되고, 기존계약자 중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하게 되며,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기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됩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세대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할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임대기간 중에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할 경우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전대가 불가합니다.(단, 공공주택특별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의 이유로 양도나 전대가능)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2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며 임대보증금, 임대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 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또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 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1. 공급대상

		세대당 주택면적(m²)					공급		
지구	주택 유형	공급	·면적	계약면적 (계)	최고 층수	건설 호수	잔여 예비자수	금회모집 예비자수	최초 입주
		주거전용	주거공용						
서울석촌	17A	17.53	11.7251	29.2551	5	6	0	4	2012.11.26
시골식는	24A	24.71	16.5275	41.2375	<b>J</b>	12	0	6	2012.11.20

- 청약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로 표기하였습니다.

(m<sup>2</sup>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m<sup>2</sup> × 0.3025 또는 m<sup>2</sup> ÷ 3.3058)

- 서울석촌단지는 17A형 6세대, 24A형 12세대, 26A형 4세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 단지는 1개동이며 최고층수는 5층입니다.
- 잔여 예비자수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공가공급 등으로 인해 변경되는 수치입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지붕은 평지붕, 지하주차장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입니다.

##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최초 입주세대 기준)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지	주택형		기본임대보증금		
		합 계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월임대료
니으서초	17A	50,449,000	10,000,000	40,449,000	263,710
서울석촌	24A	52,743,000	10,500,000	42,243,000	

- 상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주 및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 상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
- 임대보증금 추가납부는 선택사항으로 추가납부한도액 범위 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추가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5%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외부샷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상호 전환은 입주 시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이전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임차인이 월 임대료 증액을 신청한 경우 입주 시 계약서상 잔금을 완납하고 환급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 임대보증금 확대(월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5% 적용 시

단지	주택형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보증금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서울	17A	37,000,000	154,170	87,449,000	109,540
석촌	24A	46,000,000	191,670	98,743,000	129,370

#### ※ 월임대료 확대(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 현행 전환요율 2.5% 적용 시

단지	주택형	최대 추가납부 가능 월임대료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환급액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서울	17A	62,500	30,000,000	20,449,000	326,210
석촌	24A	62,500	30,000,000	22,743,000	383,540

###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분 양 전 환 기 준
HOTT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2012.12.)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분양전환시기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공고이전 시행된 조기분양전환에 대하여 신청할 수 없음
분양전환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 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 ※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곳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3.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년 03월 03일(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주택건설지역(순위별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 신청자의 직계비속	전성자의 군니메구자와 세대할 구인당목표성에 함께 당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주택소유여부,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 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적상실자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하나(세대원 자격검증이 불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검색하기 전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 ※ 금회 공급하는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하거나 1인 중복신청 또는 부부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함.
- ※ 당첨자 전원에 대해 정부전산망 등을 통해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을 실시하며,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 당첨자선정방법

• 주택형별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당 거주지역에 따른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시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발표함.(당첨자 전원이 예비후보자가 아님, 무주택 등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당첨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 • 순위 결정기준

순 위	순 위 요 건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b>2021년 03월 03일</b> ) 현재 서울시 <b>송파구 거주자</b>
2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b>2021년 03월 03일</b> ) 현재 서울시 <u>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u> 거주자

#### • 배점기준표

구분	항 목	총점		배 점 내 역					
			5점	4점	3점	2점	1점		
	합 계	20	-	-	-	-	-		
1	무주택 기간	5	10년이상	7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만 19세 이상 부터 산정	
2	청약저축 납입횟수 (납입인정회차)	5	96회이상	84회이상 96회미만	72회이상 84회미만	60회이상 72회미만	24회이상 60회미만	청약저축 납입확인서	
3	당해주택건설지역 (서울시)거주기간	5	10년이상	7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만 19세 이상 부터 산정	
4	신혼부부 여부	3	-	-	혼인기간 3년이하	혼인기간 3년초과 5년이하	혼인기간 5년초과 7년이하		
(5)	차량 소유여부	2	-	-	-	차량 무소유	-		

<sup>\*</sup> 배점별 만점까지만 배점하고 동점 시에는 무주택 년 수가 많은 자, 청약저축 납입횟수(납입인정회차)가 많은 자, 순위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한 년 수가 많은 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모두 동일한 경우 수작업 추첨** 으로 당첨자 선정

<sup>-</sup> 무주택 년 수 산정예시 : 실제 무주택기간이 6년 7개월인 경우, 인정되는 무주택 년 수는 6년임

#### ① 무주택기간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날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말함.
- 다만, 세대주 기준 **만 19세 이후부터의 기간**만 인정하고, 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 인정 가능

#### ② 청약저축 납입횟수(납입 인정회차)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한 횟수(납입인정회차)를 말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③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2021년 03월 03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만19세 이후부터 거주한 기간만 인정
- 주민등록 말소가 있는 경우, 말소 해제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한 기간을 말함

#### ④ 신혼부부 여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기준)이 7년 이내인 자를 말함

#### ⑤ 차량 무소유 여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전원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나,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는 제외함

## 4. 신청일정 및 장소

#### ■ 신청일정

공급 유형	공급형별(m²)	신청자격	신청접수일자	당첨자 발표	신청접수 장소
10년	서울석촌	1순위	2021.03.11.(목) 10:00 - 16:00시	2021.05.28.(금) 17시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154 LH강남8단지
공공 임대	(17A, 24A)	2순위	2021.03.12.(금) 10:00 - 16:00시	(www.kohom.or.kr)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apply.lh.or.kr)게시	서울강남권 도시형주택관리소 (02-6205-0359)

- 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순위(거주지역)별로 지정된 신청일자에 신청접수 받습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후순위 접수여부는 선순위 신청접수 마감시간 이후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or.kr)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apply.lh.or.kr)에 게시.
- 신청접수는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접수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청약자격(거주지역, 주택소유여부, 세대주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자격상실,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공급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됩니다.

#### 5.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 신청일정

- 신청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2021년 03월 03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하고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원본제출)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아래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계약안내 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고 예비입주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당첨 후 계약안내는 모집접수 시 기재한 주소, 전화로 통보하오니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주택관리공단 서울강남권도시형주택관리소(02-6205-0359)에 통보하기 바라며,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발급처	부수
임대공급신청서	• 신청하려는 형별 등 작성	현장비치	1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동의방법) 아래에 있는 붙임 서류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제출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신청자 작성	1통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 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완서류에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미 제출 시 신청 불가)	주민센터	1통
주민등록표초본	<ul> <li>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li> <li>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상 서울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li> <li>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0년 이상 주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시, 세대주관계란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표시되도록 발급</li> <li>※ 세대원 중 전입일 / 변동일이 표기가 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추가 제출</li> </ul>	주민센터	1통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 대리인(본인 및 배우자 이외) 신청시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 신청자격 순위 등 보완서류(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비고	발급처	부수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원 전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센터	1통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주민센터	1통
혼인관계증명서	<ul> <li>배점표상 '신혼부부 여부'에 해당하여 체크한 경우 제출</li> <li>또는 만19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제출</li> </ul>	주민센터	1통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주택관리번호: 2021000108 ※ 청약순위 확인서에 있는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표시(인정회차)를 확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서비스	1통
(신청자의 배우자) 외국인인 경우	• 배우자가 재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표 제출 •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제출	출입국 관리사무소	1통

## 6. 당첨자결정

#### ■ 최종 예비후보자 결정

- 신청자 접수, 당첨자 선정,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정부전산망을 통한 주택소유여부 검색 및 소명기회 부여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내에 아래의"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증명서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당첨을 취소합니다.)
- 무주택 등 적격자를 예비후보자로 최종 등록하고 순위에 따라 관리합니다.
- 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or.kr) 나 LH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7. 기타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신청서류	<ul> <li>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됩니다.</li> <li>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li> <li>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li> </ul>
기타사항	<ul> <li>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또한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li> <li>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li> <li>금회 공급모집 시 납입회차를 인정받은 청약통장으로 다른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에 청약 가능합니다.</li> <li>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여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이 공고문에서 언급되는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보유 기준」및「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자격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li> <li>임대기간동안 입주자 및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입주할 경우 해당 주택은 공사에 명도하여야합니다.</li> <li>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발금에 처하게됩니다.</li> <li>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따릅니다.</li> </ul>
단지 외부여건	<ul> <li>당 도시형생활주택 인근에 석촌역(8,9호선), 잠실역(2,8호선)이 위치하며, 송파대로 인근에 위치하여 광역버스 및 간선.지선버스 이용이 용이함</li> <li>본 도시형생활주택 서측에 사적 제243호 백제초기적석총이 있으며 북측에 석촌호수, 롯데월드 및 롯데백화점, 남측으로 가락시장 및 가든파이브(복합생활공간) 등이 위치함.</li> <li>본 도시형생활주택 주변으로 석촌초등학교, 일신여자중학교, 잠실여자고등학교, 배명 중.고등학교 등 이 위치함.</li> </ul>

- 층수는 5층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 옥상조경이 있으며, 엘리베이터가 설치됨.
-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건물출입구에 CCTV를 설치함.
- 북측세대는 인접건물과의 프라이버시를 위하여 창문에 차면시설 설치됨.
- 건물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제한됨.
- 1층에 주차장,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함 및 무인택배보관함 등이 위치함.
- 각 실에 냉장고, 드럼세탁기, 가스쿡탑, 반침장, 비데 등 빌트인으로 시공되어 있음.
- 에어컨용 냉매배관이 매립 설치되며, 벽걸이형 기준으로 시공됨.
- 지붕에 무궁화위성 및 지상파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음.
- 초고속정보통신 1등급이며, 동 출입구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됨.
- 주민편의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확인·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에 별도의 관리사무소는 없음.

단지

내부여건



서울지역본부장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 서울강남권도시형주택관리소장

### [붙임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53조)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를 확인

###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나.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 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건물등기 부와 건출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 2.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 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m<sup>2</sup>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 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m²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의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법」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로써,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 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 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 양도·전대 확인 등
-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V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소득세법」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등

- 라. <u>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재 6</u> 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 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7.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제49조의7에 따라 불법 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u>주민등록번호(외국인</u>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소득·재산·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성명, <u>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u> 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u>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u> 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기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u>입주자 만족도 조사</u>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u>임대료 결제(카드),</u>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mark>한국부동산원</mark> , 금융결제원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확인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u>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u> 록번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유면서난를 통한 암료고 지서 및 각종 앤 뮨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압주자격 감증내역 등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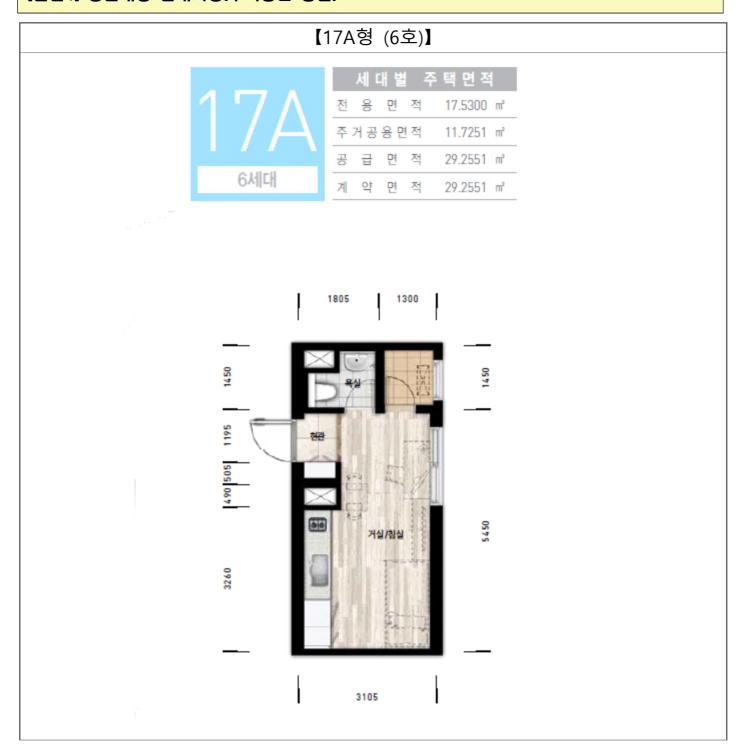
- 다. <u>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u>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u>본인의 고유식별정보</u>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5.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u>본인의 민감정보(장</u>애유형, 장애정도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6. [필수] 본인은 위 2~5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 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 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 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7. **[선택]** 본인은 <u>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u>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등의합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u>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u> 홍보
-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 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 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8. [필수] 본인은 위 1~7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 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 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9.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주) 서울강남권도시형주택관리소장 귀하

					위	임	장		
			<b>자</b> 소 처	:		(	-	)	(인)
	-		<b>자</b> 소 처	:		(	-	)	(인)
	위위	임히	는	사항 :					
『LH 서울석촌도시형생활주택(10년 공공임대) 신청접수에 관련된 서류제출, 신청서 작성 및 발급서류의 수령 등 일체의 행위』									
	위위	임어	[[	l른 서약					
	위임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수임자의 착오 또는 부정행위로 인한 귀책에 대하여 귀 공사에서 임의 조치하여도 이의 없음								
					위와 같	날이 위임함			
					20				

첨 부 : 위임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수임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1부. 끝.

## [붙임4] 공급대상 안내사항(주택형별 평면)



## [붙임4] 공급대상 안내사항(주택형별 평면)

# 【24A형 (12호)】 SEOUL SEOKCHON 세대별 주택면적 24.7100 m² 16.5275 m² 공 급 면 적 41.2375 m² 12세대 41.2375 m² 725 2060 1615 4375 거실/칭실 1365 3035